

◆ 퇴직연금 지배구조와 감시기능체계 개선방안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1. 감시기능체계의 개선 필요성 증대

근로자와 수탁자(사용자, 수탁기관, 운용기관)간의 이익 상충문제(본인·대리인문제)를 해소하여 퇴직연금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탁자책임, 수탁자의 자격 및 적격요건, 제3자적 감시기능, 수탁자의 보고·통지의무 등과 같은 퇴직연금 감시기능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요구됨.

-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가 조기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수탁기관을 포함한 수탁자들이 근로자 니즈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 있는가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감시기능체계 개선이 요구됨.
- 그 이유는 연금재정 적립의무를 강화하더라도 수탁자를 적절하게 통제·관리할 수 있는 감시기능체계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와 근로자간에 이익상충문제가 발생, 근로자 수급권보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임.
- 따라서 감시기능과 관련이 있는 수탁자책임, 자격 및 적격조건, 내부통제시스템, 제3자적 감시기능(협회의 감시장치), 보고 및 통지의무 등이 근로자간의 이익상충문제 해소와 수급권보호차원에서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
- 여기에서는 퇴직연금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퇴직연금 기능을 보다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퇴직연금 지배구조상의 감시기능체계를 OECD와 비교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2. 지배구조별 감시기능 체계

퇴직연금 지배구조에서는 기업지배구조에서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경영과 소유의 분리문제)이외에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자와 수탁기관간, 근로자와 운용기관간의 이익상충문제 등 다양한 퇴직연금 지배구조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퇴직연금 지배구조(계약형 지배구조, 기금형 지배구조) 특성을 고려한 이익상충문제 해소 장치마련이 요구됨.

가. 지배구조와 근로자 이익상충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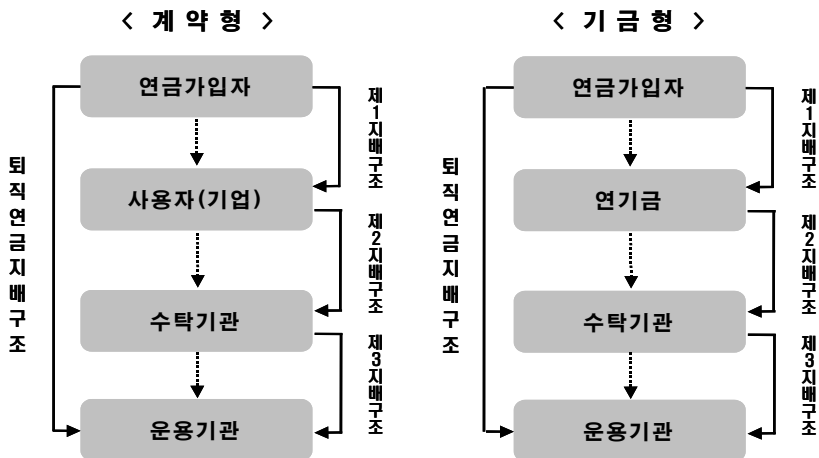
- 퇴직연금 지배구조 문제는 기업 지배구조상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 이외에 수탁자(기업, 수탁기관 등) 이익과 근로자 이익이 충돌하는 현상도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문제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이에 퇴직연금 지배구조 문제는 기업지배구조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 이외에 수탁자와 근로자간 이익 상충문제 해소를 위한 장치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즉, 기업지배구조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소유자 자산의 보관장치, 경영자에 대한 충실의무 부과, 경영자에 대한 제3자 감시장치 등 이익충돌 해소장치 이외에 수탁자와 근로자 간의 이익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요구됨.

나. 지배구조 형태별 감시기능체계 특징

- 퇴직연금은 연금 가입자인 근로자의 소유이므로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을 연금자산의 운용에 반영시키는 절차 및 시스템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퇴직연금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주요한 과제임.
-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자금흐름에 따라 연금가입자로부터 연기금, 수탁기관, 최종 운용기관에 이르기까지 3단계의 지배구조를 형태를 띠고 있음.

- 기금형 퇴직연금지배구조에서 제 1지배구조는 연금가입자가 연금자원을 연기금에 적립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책임을 지고 있는 연기금과 관련된 지배구조임.
- 제 2지배구조와 제 3지배구조는 각각 연기금이 자금 운용을 위임한 수탁기관과 관련된 지배구조, 수탁기관이 자산운용 대상으로서 상품운용기관과 관련된 지배구조를 나타냄.

<그림 1> 계약형 및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¹⁾



- 우리나라는 노·사간 합의인 규약을 근거로 기본 제도가 설정되나, 실질적인 제도운영은 수탁기관인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계약형 지배구조 형태임.
- 계약형 지배구조에서는 근로자 이익보호를 위해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철저히 요구함.
- 사용자가 근로자 이익에 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적절한 통제장치의 마련과

1)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회사와는 별도로 독립된 퇴직연금기금을 신탁형태로 설치하는 운영하는 지배구조를 의미하며,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연금제도에 대한 관리 및 기금 운용 등을 일괄하여 금융기관에게 위탁하는 지배구조를 의미함.

더불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3. OECD 지배구조 기준 및 감시기능체계 운영 사례 : 미국, 영국, 일본 중심

퇴직연금 운용 이해 관계자가 다양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운영전반에서 근로자의 이익 상충문제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선진국의 퇴직연금 감시기능체계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음.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한 감시기능 수준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보고 및 통지의무 등과 같은 시장기능에 의한 감시기능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 OECD 지배구조 기준

- OECD의 퇴직연금 지배구조 기준²⁾은 연기금 등이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하도록 권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즉, 수탁기관 책임명시, 연기금운용자의 책임강화, 연기금운용자 자격기준강화, 자문 및 전문가 선임, 독립적인 감사, 보험계리사의 선임,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보고체계의 확립, 공시기능강화 등을 지배구조 기준으로 제시함.
- OECD의 퇴직연금 지배구조 기준은 감시기능체계 면에서 수탁자책임, 자격 및 적격 기준, 제3자적 감시기능 (협회의 감시기능장치), 내부통제시스템, 보고 및 통지의무, 공시 의무 등으로 분류 가능함.

2) OECD 지배구조 기준(Guidelines for Pension Fund, Governance)은 OECD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Committee and Working Party on Private Pensions에서 작성되었으며, 2005년 4월에 OECD 위원회에서 채택

<표 1> OECD 지배구조 기준상의 감시기능 유형

OECD의 지배구조 기준 ¹⁾	감시기능 유형
수탁기관의 책임명시	수탁자 책임
기금운영자의 책임강화	
연기금운용자의 자격기준 강화	자격 및 적격기준
자문 및 전문가 선임	제3자적 감시기능
독립적인 감사	
보험계리사의 선임	
적절한 내부통제 기준마련	내부통제시스템
보고체계의 확립	보고 및 통지의무
공시 강화	공시 의무

주 : 1) OECD 지배구조 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은 “OECD, Guidelines for pension fund governance, April 2005.”를 참조.

나. 감시기능체계 유형별 운용사례: 미국, 영국, 일본 중심

□ 수탁자 책임

- 영국은 운영과 감시 책임의 명확한 구분, 수탁기관의 법적형태, 내부지배구조, 목적 등을 법규에 명시하고 있음.
 - 연기금 운영자의 책임강화 측면에서 계약이행의무 및 수급자 최대이익을 보호할 궁극적 책임(아웃소싱 모니터링 및 감시책임 등)이 연기금 운영자에게 있다고 규정함.
- 즉, 신탁수탁자, 사용자, 컨설턴트 등 수탁자별로 수탁자 관련 규정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그 책임 역시 엄격하게 부여되어 있음.
 - 특징적인 것은 영국의 경우 미국, 일본과 비교하여 수탁자책임 부여 측면에서 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임.

□ 자격 및 적격기준

- 영국은 연금제도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 수탁자의 전문지식을 요구하고 있음.
 - 연금 및 신탁 관련 법률, 투자 및 펀드 관련 전문지식은 DB형 및 DC형 수탁

자 모두에게, 연기금적립, 전략적 자산배분 관련 전문지식은 DC형 수탁자에게 요구함.

- 특히, DC형 수탁자는 가입자의 투자위험 부담, 투자선택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제 3자적 감시기능

- 수탁기관이 전문지식이 부족할 경우 전문가 자문 및 선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 사용자 등은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하고 수탁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또한 미국은 연금제정 건전성여부에 대해 국세청에 등록된 보험계리사의 확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보험계리사의 확인을 요구함.
 - 영국은 또한 보험계리사로 하여금 책임준비금 적립, 연금계리보고서 작성 등 연금제정과 관련된 계리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함.

□ 내부통제 시스템

- 영국 등은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연기금 운영과 감시책임이 있는 모든 관계자가 연기금운용목적에 부합하게 행동하고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영국은 연금제도 운영과 관리에 수반되는 절차를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통제됨.
-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한 통제리스크는 사기, 기업 측의 적립상태, 투자리스크, 아웃소싱기관의 법규위반·경영실패, 부적절한 제도 관리, 컴퓨터시스템 오류 등임.

□ 보고 및 통지의무

- 영국 등은 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법사항 발견시,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신고의무를 두고 있으며 감독당국은 보고된 정보를 감독활동에 활용하고 있음.
 - 보고를 요하는 중대한 사항은 부정, 연기금의 불법 사용, 투자정책 오류, 부적절한 기록관리, 운영실패 등임.
- 또한 영국은 보고자들이 보고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신호등 체제(traffic light

framework)를 두고 있으며 위반상태가 적색이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어 감독 당국에게 반드시 보고토록 함.

- 퇴직연금 관련 중요 사건발생에 대한 감독규정을 제정하여 제도 관련 사건은 수탁자로 하여금 통지하도록 의무화함.

□ 공시의무

- 수탁자는 가입자격이 부여된 근로자의 범주 및 가입방식, 적격조건, 연금수급연령 도달전 퇴직시 연금 재가입 여부, 사용자의 각출금 계산 방식 등과 같은 기본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함.
- 상품 및 가격 공시는 연금상품에 대한 가격비교테이블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수료도 자사 최고 및 업계 평균을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함.
- 수수료 공시: 확정기여형은 상품을 가입자가 선택하고, 수수료 역시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올바른 선택을 위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요구됨.

다. 선진국의 감시기능체계 특징

- 퇴직연금제도의 운영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어떠한 감시기능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느냐 등에 따라 감시기능체계상의 특징이 존재함.
- 퇴직연금 운영 목적을 제도적 장치에 의한 근로자 이익보호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시장기능 변화에 의한 감시기능체계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질 경우 감시기능 수단도 달라질 수 밖에 없음.
- 근로자의 이익 상충 문제는 퇴직연금 운용 이해관계자가 다양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운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선진국의 퇴직연금 감시기능체계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음.
- 수탁자책임 중심에서 제 3자적 감시기능 강화, 보고 및 통지 의무 등과 같은 시장중심의 감시기능체계로 전환됨.
- 선진국의 경우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한 감시기능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보고 및 통지 의무, 공시의무 등과 같은 시장기능에 의한 감시기능 강도는 높은 수준임.

- 즉, 시장기능에 의해 근로자의 이익상충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시기능 대상도 수탁기관 이외에 수탁자까지 확대되고 있음.

4. 감시기능체계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감시기능 체계는 OECD 기준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사용자에게 대한 수탁자책임이 미흡하다는 점, 자격 및 적격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 보험계리사 등 제3자적 감시기능이 취약하다는 점, 최소한도의 보고 및 통지의무 규정만 있을 뿐 세부적인 규정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가. 감시기능체계 현황

- 우리나라는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형태를 띄고 있어 법상 별도 수탁자를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감시기능 수준은 낮음.
- 즉, 연기금운용을 수탁기관에 일임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별도의 감시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함.
- 또한 미국과 같은 퇴직급여보장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도산시 이에 대한 보장장치가 없으며 보험계리사나 외부감사인에 대한 내용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확정급여형에서 연금제리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연금제리에 대한 정의나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운영을 일괄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책임부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제도운용의 직접적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및 위탁운

용에 상당 부분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사용자의 수탁자책임이 더욱 요구됨.

나. 감시기능체계 문제점

- ☐ 수탁자책임이 퇴직연금사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책임, 의무, 권한 등과 관련된 규정은 미흡함.
 - 퇴직연금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자문 및 전문가 선임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 또한 보험계리사의 역할제고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연기금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없음.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최소한도의 보고 및 통지의무 규정만 있을 뿐 세부적인 규정자체가 없고, 공시의무는 퇴직연금 감독차원에서 최소한도의 공시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음.

<표 2> 우리나라와 OECD 감시기능체계 비교

구 분	권고 사항	권고 내용	우리나라의 수준
지배 구조에 대한 권고	수탁기관의 책임 명시	• 운영과 감시의 책임이 명확히 구분 • 수탁기관의 법적형태, 내부지배구조, 목적 등을 정관에 명시	• 퇴직연금사업자 중심의 규정 • 책임, 의무, 권한 등에 대한 규정 미흡 (계약형에서는 양자의 구분 미흡)
	연기금 운용자의 책임 강화	• 운영자는 계약충실히행 및 수급자 최대이익을 보호할 공극적 책임 • 아웃소싱 모니터링 및 감시책임	
	연기금 운용자의 자격기준 강화	• 높은 수준의 정직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자격기준	• 건전성 측면에서 허가요건 등은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 • 금융권 통일성 강조로 전문성 수준은 대체로 낮음
	자문 및 전문가 선임	•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부족 시 감독기관이 전문가 자문 및 선임 요구	• 특별한 규정 및 내용 전무
	독립적 감사	• 수탁기관, 연기금운용자 및 사용자는 독립적인 감사 선임 (정기감사 수행) • 수탁기관이 적절한 조치 미이행시 중대한 사항에 관련 관리자에게 보고	• 퇴직연금 관련 독립적인 감사 선임은 없으며 기존감사가 수행 • 관리자에 대한 보고 및 신고규정 거의 부재 (단, 공시보고 등 극소수 보고사항 존재)
	연금계리사 선임	• DB에 대해 연기금은 운영자로 계리사선임 • 연기금 운영자가 적절한 조치 미이행시 지체 없이 감독기관에 보고	• 연금계리사제도 부재(현재 보험계리사 등이 아닌 비전문인력도 DB업무담당) • 근퇴법 및 감독규정에 구체적 내용이 없어 OECD수준에 미흡
	적절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 연기금 운영과 감시 책임이 있는 모든 자가 연기금운용목적에 부합하게 행동하고 법률을 준수할 수 있는 내부통제 마련 • 성과평가, 보상체계, 정보프로세스, 리스크관리 절차 등 조직과 운영 절차에 포함	• 특별한 규정 및 내용 없음
	보고체계 확립	• 효과적이고 적시적인 보고채널 마련	• 주무부처와 협의사항만 존재 • 규정/ 지침이 아닌 지시에 의존
	공시 및 규제	• 연기금운용자는 모든 당사자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시 • 가입자를 위한 법정구제장치 필요	• 퇴직연금사업자 중심 정보 제공 • 감독규정상 인터넷 공시의무 • 법정구제장치와 관련 규정 없음

5. 감시기능체계 개선방안

퇴직연금 감시기능체계 개선은 현재와 같은 계약형 지배구조에서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기금형 지배구조에서 보다 요구되는 점에서 선진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에 대비한 감시기능 장치의 마련이 요구됨.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감시기능체계를 벤치마킹하면서 감시기능 관련법규의 체계화, 사용자 관련 규정강화, 감시자의 기능제고,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규정마련, 보고·통지·공시의무 강화 등이 근로자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감시기능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가. 기본방향

- 우리나라는 계약형 지배구조형태로 수탁기관과 사용자간의 불공정계약에 의해 계약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자와 수탁기관간의 이익충돌문제를 감소시키는 제반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퇴직연금 감시기능체계 개선은 계약형 지배구조에서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기금형 지배구조에서 보다 요구된다는 점에서 선진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에 대비한 감시기능 장치마련의 마련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선진국의 감시기능체계를 벤치마킹하면서 보험계리사 및 외부감시자의 역할강화, 보고 및 신고의무, 공시 강화 등이 근로자 이익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즉, 감시기능 관련 법규의 체계화, 사용자 책임 등에 관한 규정강화, 외부감사인, 보험계리사 등 감시자의 역할 강화,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규정 마련, 근로자에 대한 보고·통지·공시의무 재정비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임.

나. 개선과제

□ 감시기능 관련법규 체계화

- 선진국처럼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와 권익보호차원에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 현행 관련 법률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감시기능과 관련된 규정이 OECD지배구조 기준에서 제시하는 수준으로 보완하거나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보고·통지·공시의무 강화 등을 통해 시장원리에 입각한 감시기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퇴직연금감독규정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감시기능체계 구축을 위한 감시기능수단 설정과 이에 대한 개선책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사용자 관련 규정 강화

- 사용자는 연금사업자의 선정 등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제도의 선택 및 연금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미흡함.
 -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설정단계에서 설정이후의 단계까지 연금사무관리와 연금운영에 대해 사용자의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음.
 - 즉, 사용자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큰 반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책임은 매우 낮은 수준임.
- 따라서 제 3자를 선임하여 연금사무관리와 연금운영에 일차적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연금의 설정단계이후의 사용자 역할을 축소시킬 필요성이 있음.
 - 즉, 제 3자적 감시자에게 연금자산운용의 감시활동을 위임함으로써 퇴직연금지배구조의 3가지 요건(독립된 감시장치, 제 3감시자 선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이익충돌 해소장치)이 충족되도록 감시기능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감시자의 기능제고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는 소유자(연금수익권자인 근로자)를 위해 행동하는 독

립된 제 3자적 감시기능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음.

- 이는 근로자-사용자-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퇴직연금관계조차를 복잡한 법률관계로 보고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행위를 하는 제3자적 감시체계 도입을 유보하였기 때문임.
- 미국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 및 소유자와 연금사업자 사이의 이익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리사, 외부감사인 등과 같은 제 3자적 감시장치를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즉, 보험계리사 및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역할부여 등을 통한 제 3자적 감시기능 강화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계리사 및 외부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문화하여야 할 것임.

□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규정 마련

- 장기적으로 적절한 내부통제가 작동하여 법규 위반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규정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영국 등처럼 퇴직연금 감독규정³⁾ 개정으로 수탁자의 의무로서 적절한 내부통제 메커니즘을 갖추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즉, 감독규정에 내부통제를 제도운영과 관리에 수반되는 절차와 제도, 운영과 관리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과 제도, 자산의 안전성을 위한 절차와 제도로 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고·통지·공시의무 강화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개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시장기능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보고·통지·공시의무 관련 규정임.
- 감독당국은 수탁자와 사용자로 하여금 계리적 가치평가, 각출금이 계획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여부,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을 필요성이 있음.

- 한 사용자, 수탁기관 등 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생시 감독당국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신고의무제 도입과 보고자들이 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신호등체제 도입검토도 요구됨.
- 퇴직연금 관련 중요 사건발생에 대한 통지 관련 감독규정을 정비하여 제도 관련 사건과 사용자 관련 사건에 대해 수탁자에게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마련이 필요함.
- 공시의무측면에서는 적격조건, 연금수급연령 도달전 탈퇴시 재가입 여부, 사용자의 각출금 계산 방식, 추가각출 존재시 각출 방식, 연금수급연령, 급여 종류 및 계산방식,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을 기본 공시로 설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